



보도	2024.7.23.(화) 조간	배포	2024.7.22.(월)	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 자문·신탁감독팀	책임자 담당자	팀 장 황준웅 (02-3145-6540) 조사역 홍지의 (02-3145-6545)	
	자산운용감독국	책임자	팀 장 김세환 (02-3145-6710)	
	자산운용인허가팀	담당자	선 임 홍윤태 (02-3145-6712)	

#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

- 자본시장법 개정(24.8.14. 시행) 내용 관련 -

### 주요 내용

- ◈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('24.8.14.)에 앞서,
  - 유사투자자문업자의 **규제 이해도 제고** 및 **투자자 피해방지**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아내\*
    - \*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별

## <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>

- [1] (업무영역 정비) 온라인 양방향 채널(오픈채팅방, 유튜브 등)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
  - ☞ **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**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**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필요** ('24.4.5. 보도자료 '유사투자자문업자의 **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**' 참고)
- [2] (불건전 영업행위 금지)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(자본시장법§55, §98① 준용)를 금지
- ③ (광고규제) 유사투자자문업자가 **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**하거나,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·광고 금지
- [4] (진입·퇴출)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**확대**하고, **재진입 제한 강화**(대표이사→임원까지로 확대)

**1** 업무 영역

- Q. 법 개정 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?
- A.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합니다.
- □ 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(자본시장법 §7③).
  - ※ '(붙임1)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개요' 참고
  - **유사투자자문업자**가 **유료 멤버십**을 운영하는 경우 **댓글 기능 차단** 등을 통해 **단방향 채널**로만 유튜브 활동 등이 **가능**합니다.
    - ※ 문자메세지, 카카오톡,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함

#### 추가 Q&A (유사투자자문업자)

- Q1. 카페 및 블로그 내에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.
- A1. 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'유료회원이 이용'할 수 있는 게시판 및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.
- Q2. 투자자문사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투자자문 행위가 가능한가요?
- A2. **업무협약** 만으로는 **투자자문**이 **불가**하며, **어떠한 형태**로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**투자자문 행위**를 **영위**하기 위해서는 **정식 투자자문업체**로 **등록**\*하시기 바랍니다.
  - \*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(자본시장법 §445)

## 투자자 유의사항

-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.
- →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금융회사'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금융투자업자(투자자문업자 등)'가 아닙니다.
- →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여타 **금융회사**(인·허가, 등록)와 **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**으로 **영업**을 할 수 있어 **전문성**이 떨어질 수 있으니 **유의** 바랍니다.

2 업무 방식

- Q. 온라인 상에서 회원가입 절차, 환불규정 등에 대한 안내도 1대1 상담이 금지되나요?
  - A. 회원가입, 환불규정 등에 대한 단순 문의용대는 가능합니다.
- 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'금융투자 상품에 대한'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'개별성 없는 조언'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(자본시장법 §101①).
  - 따라서,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 가입,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(C/S) 차원의 1대1 응대는 가능합니다.

3 진입 퇴출

- Q.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?
  - A.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.
- □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**불특정 다수인**을 **대상**으로 **금융투자** 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\*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,
  - \* 종류, 종목, 취득·처분, 취득·처분의 방법·수량·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
  - ① 유료회원제 운영(예: 멤버십 서비스) 등을 통해 구독자로부터 **직접적** 대가를 받는 경우,
    -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 '유사투자자문업' 신고,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 '투자자문업' 등록이 필요합니다.
  - ② 다만,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(예: 별풍선 등) 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 →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.

## 투자자 유의사항

-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→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금융감독원의 '**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**' 홈페이지<sup>\*</sup> 에서 대상 업체가 **신고된 업체인지 여부**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  - \* 파인 홈페이지(fine.fss.or.kr) > 금융회사 정보 >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

**4** 불건전 영업 Q. 수익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「목표 수익률 xx %」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요?

A.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됩니다.

- 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"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"를 해서는 안됩니다 (자본시장법 §101의2②제3호).
  - 따라서,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(예: 목표 수익률,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여 한 종목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)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도록 유의\*바랍니다.
    - \*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자본시장법 §449①제34의3호)

#### 투자자 유의사항

- 유사투자자문업자의 **1:1 자문행위**(미등록 투자자문), **손실 보전행위**, **실현되지 않은** 수익률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·광고를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 바랍니다.
  - → 금융감독원(fss.or.kr) 홈페이지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「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」(다만, 형법상 사기 혐의 등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바랍니다.)
  - 5 Q.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기타 A.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.

□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(www.kca.go.kr)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,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 투자자 유의사항

-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
 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유의 바랍니다.
- →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**면밀히 확인**하여,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하여야 합니다.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#### 붙임 1

##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개요

- □ [개요]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, 자기자본· 전문인력·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되며, 업무단위별로 취급 상품범위에 차이\*가 있습니다.
  - \* 투자자문업 업무단위별 자문 가능한 상품범위
    - ✓ 5-1-1(최소자기자본 2.5억원) : 증권, 장내파생상품, 장외파생상품 등
    - ✓ 5-21-1(최소자기자본 1억원) : 집합투자증권, 파생결합증권 등
  - ※ 이외에도 정보교류차단 등을 위해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필요(주거공간 불가)

#### [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]

구 분	등 록 요 건
회사형태	○ 상법상 주식회사 등
자기자본	○ 업무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을 충족할 것(5-1-1 : 2.5억원, 5-21-1 : 1억원)
전문인력	○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할 것
대주주·임원	○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충족할 것
신청회사	○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이해상충방지체계	○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,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체계를 갖출 것

### [전환 등록 신청방법]

- ①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접속
- ② 민원·신고 인허가 사전협의(S.T.A.R.T.) 사전협의 신청
- ③ 인허가 업무 선택(자본시장 등록 투자자문·일임업 등록)
- 4 사전협의 신청 후 투자자문업 등록신청 화면 이동 (하단 금융투자업 사전협의 등록신청 바로가기 클릭)



투자자문업·투자일임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제공된 템플릿에 맞춰 등록신청서 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

# 붙임 2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간 차이

□ **투자자문업자**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비해 **강화된 진입·영업행위**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[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진입·영업규제]

구 분	투자자문업	유사투자자문업
영업방법	- <b>일대일(1:1)</b> 투자자문 * <u>개별</u> 투자자별에게 <u>차별화</u> 된 자문서비스 제공	- <b>불특정 다수</b> 대상의 투자조언 * <u>불특정</u> 다수에게 <u>동질적</u> 조언서비스 제공
진입요건	- <b>금융위 등록</b> (자시법§18) * 자기자본, 전문인력, 대주주 요건 등 심사	- <b>금융위(금감원) 신고</b> (자시법§101) * 결격요건 미해당시 단순 신고 후 영업 가능
감독검사	- 금감원 검사대상(자시법§419) (자본법상 금융투자업자)	- 금감원 제한적 검사(자시법§101⑪) (보고·자료제출의무 위반시 등)
권유규제	- 적합성·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부당권유금지 등 (금소법§17~21)	- 권유행위 관련 규제 미적용
금지행위	- 투자광고규제, 계약서 교부의무 등 적용(자시법§98, 금소법§22~23) * 투자자문업자 영업규제 및 금융투자 회사 공통 영업규제 모두 적용	-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(자시법§98) * 금전·증권 등의 보관·예탁 금지, 금전·증권 등의 대여 금지, 선행매매 금지 등
공시보고	- 업무보고서 등 제출(자시법§33①) - 주요 경영사항 공시(자시법§33③)	- 업무 폐지, 명칭·소재지·대표자 변경시 보고(자시법§101②)
확인	- 금감원 '파인' → '제도권금융회사조회'	- 금감원 '파인' → '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'
금융회사 여부	- O →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적용	- X →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미적용